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제 정 2021. 12. 31.
개 정 2024. 9. 시행 2024. 10. 1.
개 정 2026. 10. 시행 2026. 10. 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공사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학계·연구계·경제계·법조계·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3.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

③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 평가위원 선정 시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사에서 퇴직한 사람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준하여 평가대상 업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인 경우

나.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를 대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다. 위촉일 전 2년 이내에 본인이 평가대상 업체를 대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라.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평가대상 업체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을 소유한 경우

3.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4.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5.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7.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명단을 다른 사업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평가위원은 향후 3년 간 공사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9.>

제6조(평가위원 명단 운용) ① 각 사업부서는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한다.

제7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제9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위원회를 5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술평균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⑥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 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9.>

제11조(심사·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2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공사 내부 방침 등에 따른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1.12.31.)

이 기준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

이 기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10.)

(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O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 ㅇ 본인 또는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이거나, 업체를 대리·자문하고 있거나(최근 2년 이내 대리·자문 포함), 업체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 ㅇ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ㅇ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ㅇ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ㅇ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7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평가위원은 위의 주의사항과 공지사항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

(20　　년도)

순번	성명	주요경력	선정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표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사업예산 :

2. 평가개요

○ 심사(평가)일시 :

○ 심사(평가)장소 :

○ 사업담당자 :

3. 평가위원 구성

○ 심사(평가)위원 수 : 명

순번	성명	주요경력	제척사유 유무	비고
1				
2				
3				
4				
5				
6				
7				
8				

20 . . .

○○○팀장 ○○○ (서명 또는 인)

[별표 4]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①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②본인 또는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이거나, 업체를 대리·자문하고 있거나(최근 2년 이내 대리·자문 포함), 업체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③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④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⑤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⑥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⑦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